

공고 제 1 호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03월 14일

삼학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숙	이 *숙 1963-11-19	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삼학안1길 (삼학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3-03